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율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0분의 40" 을 "100분의 30" 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